

의안 번호	2532	【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변경(안)】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

1. 검토경과

- 제출 일자 : 2025. 12. 5.(금)
- 제출 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위원회 회부일자 : 2025. 12. 5.(금)
- 위원회 심사일자 : 2025. 12. 16.(화)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, 「2025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에 따라 2025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(안)에 대하여 심의·의결 받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연도말 기금조성액: 2,065,664천원

(단위 : 천원)

2024년도 말 조성액 ㉠	2025년도 조성계획			2025년도 말 조성액 ㉡ = ㉢ + ㉠
	수입 ㉢	지출 ㉣	증감 ㉤(=㉢-㉣)	
2,034,741	98,959	68,036	30,923	2,065,664

나. 변경내용

1) 수입계획: 83,060천원 → 98,959천원(15,899천원 증)

가)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액: 67,000천원 → 67,400천원

나)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증액: 2,560천원 → 2,680천원

다) 그 외 수입 증액: 2,300천원 → 27,779천원

라) 민간융자금회수 수입 감액: 11,200천원 → 1,100천원

마) 예치금회수 수입 증액: 2,032,421천원 → 2,034,741천원

2) 지출계획: 161,156천원 → 68,036천원(△93,120천원, 57.7%)

가) 비용자성사업비(탈수급자 사회보험료) 감액: 7,200천원 → 4,080천원

나) 용자성사업비(용자금대여) 감액: 100,000천원 → 10,000천원

다) 예치금 증액: 1,954,325천원 → 2,065,664천원

※ 정책사업(저소득층 생활안정 기반 구축) 지출금액의 20% 이상 초과 변경하여
지방의회 의결

4. 근거법규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
- 「2025년 예산편성 및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」

5. 검토의견

- 본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은 용자성 사업비인 용자금 대여비 감액으로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% 초과 변경되어 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임
-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
 - 수입계획은
 - 그 외 수입 증액 : 2,300천원→27,779천원(증 25,479천원)
 - 민간용자금회수 수입 감액 : 11,200천원→1,100천원(△10,100천원)
 - 예치금회수 수입 증액 : 2,032,421천원→2,034,741천원(증 2,320천원)
 - 지출계획은
 - 비용자성 사업비(탈수급자 사회보험료) 감액 : 7,200천원→ 4,080천원(△3,120천원)
 - 용자성 사업비(용자금 대여) 감액 : 100,000천원→10,000천원(△90,000천원)
 - 예치금 증액 : 1,954,325천원→2,065,664천원(증 111,339천원)
 -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기정액 대비 18,219천원이 증액되었음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에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%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.

- 이에 따라 정책사업인 ‘저소득층 생활안정 기반 구축’ 사업비가
기정액 161,156천원에서 68,036천원으로 93,120천원이 감액되어
△57.7% 변경됨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
기금운용 계획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근거법규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